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 훈계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과 지방○○○○○ ○○○
(전 ○○○○과)
- ② 울산광역시 ○○○○과 지방○○○○○ ○○○
- ③ 울산광역시 ○○○○과 지방○○○○○ ○○○
(전 ○○○○과)
- ④ 울산광역시 ○○○○○본부 ○○부 지방○○○○○ ○○○
(전 ○구 ○○과)
- ⑤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전 ○구 ○○과)

내 용

위 관련자 중 지방○○○○○ ○○○은 2015. 1. 1.부터 2017. 6. 30.까지, 지방○○○○○ ○○○은 2016. 7. 14.부터 2017. 7. 13.까지, 지방○○○○○ 심○○○은 2014. 8. 28.부터 2016. 7. 13.까지, 지방○○○○○ ○○○은 2014. 8. 22.부터 2015. 7. 9.까지, 지방○○○○○ ○○○은 2015. 1. 12.부터 2015. 7. 9.까지 지방하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울산광역시(○○○○○과)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비의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2. 10. 26. 울산광역시 ○구 ○○○○길 0(○○동)

에 있는 ○○건설(주) (대표자 ○○○)와 1개사¹⁾와 ‘○○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총 공사부기금액 8,839,997원²⁾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1. 2. 착공하여 2017. 12. 22. 준공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지침(국토교통부, 2014. 5월)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울산광역시)는 계속사업의 여건변동 또는 설계기준 변경 등으로 사업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총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보조사업

1) 울산광역시 ○○군 ○○읍 ○○리00에 있는 (주)○○○ (대표자 ○○○)
2) 2017.12.19. 총 공사부기금액 10,964,070,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

자는 설계경제성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강구실적, 지방비 분담계획 등에 대한 자구책³⁾ 마련 계획을 포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317호, 2017. 1. 1.)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착공이후의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울산광역시(○○○○과)에서는 ‘○○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필요한 공룡발자국 공원 조성 공사비(18,240,000원)⁴⁾를 위 공사 설계에 반영하여 2017. 12. 22. 위 공사를 완료하는 등 [붙임]과 같이 총 831,357,000원 상당이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⁵⁾

3) 당초 기본계획상 사업계획에 없는 시설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방비 추가분담 계획 등

4) 총 30,400,000원에서 국고보조금 60% 해당 금액.

5)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준공 실적보고서 제출 시 386,762,000원은 자체재원으로 정산할 계획이며, ○구청에서는 ○○천 ○○의 강 사업비에서 집행된 국고보조금 444,595,000원을 반납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변경사항 발생 등 총사업비 조정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 제출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부당하게 사용한 국고보조금 831,357,000원 상당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집행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목적 외 집행 내역			
	건명	집행액 (a+b)	국고보조금(a)	지방비(b)
계	10건	1,533,793,000	831,357,000	702,436,000
○○강(○○~○○) ○○)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 60%)	소계 4건	644,603,000	386,762,000	257,841,000
	○○교~○○교 구간 ○○○○ ○ 공원 조성	30,400,000	18,240,000	12,160,000
	○○○○○ 접근 데크 설치	17,423,000	10,454,000	6,969,000
	자전거도로 데크설치 구간 검토 (7개소, L=197m)	418,930,000	251,358,000	167,572,000
	○○○○제 ~○○교 자전거 도로의 연결 교량 설치	177,850,000	106,710,000	71,140,000
○○천 ○○의 강 조성사업 (국고 50%)	소계 6건	889,190,000	444,595,000	444,595,000
	○○3구간 인도교 설치	88,769,000	44,384,500	44,384,500
	중류 ○○○○선 문화공간 창출 을 위한 콘텐츠 조성	107,110,000	53,555,000	53,555,000
	하류부 휴게공간 경관개선을 위한 수목식재	422,116,000	211,058,000	211,058,000
	중류부 휴게공간 조성 및 식재	145,209,000	72,604,500	72,604,500
	3구간 암거 및 2,3구간 준치암 거 연석부 석재공사	46,577,000	23,288,500	23,288,500
	시정부 오수펌프실 펌프교체 및 원격제어공사	79,409,000	39,704,500	39,704,500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